

기존주택매입임대(다가구, 원룸) 장기미임대 입주자모집

※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
★ 기존주택 매입임대란

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매입임대(다가구, 원룸)를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%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.

- 매입임대(다가구, 원룸) 장기미임대주택의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받습니다. 다만,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고, 방문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(전입일 등을 실제로 불리하게 기재하는 경우, 서류미제출탈락)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.
- 매입임대 유형(다가구 가형, 다가구 나형, 원룸) 중 1세대 1개유형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1 공급절차 및 일정

▶ 신청절차

주택공개	신청접수	서류심사 대상자 발표	심사대상자 서류제출	소득·자산 등 소명	당첨자 발표	계약체결
03.13(화) ~ 03.15(목)	03.19(월)~03.21(수), 03.26(월)~03.30(금)	04.06 (금)	04.16(월) ~ 04.18(수)	대상자 별도통보	06.22 (금)	07.10(화) ~ 07.12(목)

※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수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1~3순위 신청접수 받음.

2 공급대상 주택현황

▶ 가구원수별 신청가능 주택유형 : 다가구 (가형 59호, 나형 16호), 원룸 174호

주택유형		전용면적	가구원수
원룸		50㎡ 미만	1~2인 가구
다가구	가형	50㎡ 이하	모든가구
	나형	50㎡ 초과 ~ 85㎡ 이하	3인 이상 가구(2인 이하 신청불가)

※ 1가구 1주택유형 1개“동” 자치구제한 없이 신청가능

※ 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

▶ 공급대상주택 :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매입임대주택(홈페이지 공고문 참조)

- 다가구 가형 공급대상주택 : 가형 59호(모든 가구)
- 다가구 나형 공급대상주택 : 나형 16호(3인이상 가구)
- 원룸 공급대상주택 : 원룸 174호(2인이하 가구)

▶ 주택공개 : 2018.03.13.(화) ~ 2018.03.15.(목)

- 공급대상주택 총 249호 공고문 참조

▶ 신청접수 : 현장접수 및 인터넷접수

주택유형	입주자격	신청기간	비고
원룸	1순위, 2순위	2018.03.19.(월) ~ 03.20.(화)	www.i-sh.co.kr/app 및 방문인터넷 접수
	3순위	2018.03.21.(수)	
다가구	가형 1순위, 2순위	2018.03.26.(월) ~ 03.27.(화)	
	가형 3순위	2018.03.28.(수)	
	나형 1순위, 2순위	2018.03.29.(목)	
	나형 3순위	2018.03.30.(금)	

※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처리됩니다.

▶ 서류심사대상자 및 당첨자발표 등 일정

구분	서류심사 대상자발표	심사서류제출	당첨자발표	계약일시	입주시기
일시	2018.04.06.(금) 17:00	2018.04.16.(월) ~ 04.18.(수) 10:00~17:00	2018.06.22.(금) 17:00	2018.07.10.(화) ~ 07.12.(목)	2018.07.16.(월) ~ 09.14.(금)
장소	공사 홈페이지 (www.i-sh.co.kr)	공사 (우편접수 가능)	공사 홈페이지 (www.i-sh.co.kr)	공사관할 주거복지센터	공사관할 주거복지센터

※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접수 바라며 04.18.(수)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받음을 알려드립니다.

3 신청자격 :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매입임대주택

▶ 자격요건 : 입주자 모집공고일(2018.03.02.)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

구분	입주자격요건																				
1순위	-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-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자 -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인 자																				
2순위	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인 자																				
3순위	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인 자																				
참고 자료	※ 입주자격 자산기준 등																				
	- 총자산가액 178백만원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25,450천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																				
	1) 차량기준가액 :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%씩 감가상각하여 산출																				
	2) 비영업용 자동차 :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																				
	※ 201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																				
	(단위 : 원)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3인이하 가구</th><th>4인 가구</th><th>5인 가구</th><th>6인 가구</th></tr><tr><td>소득 50% 이하</td><td>2,442,224</td><td>2,815,137</td><td>2,815,137</td><td>2,976,334</td></tr><tr><td>소득 70% 이하</td><td>3,419,113</td><td>3,941,192</td><td>3,941,192</td><td>4,166,867</td></tr><tr><td>소득 100% 이하</td><td>4,884,448</td><td>5,630,275</td><td>5,630,275</td><td>5,952,668</td></tr></table>	구분	3인이하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소득 50% 이하	2,442,224	2,815,137	2,815,137	2,976,334	소득 70% 이하	3,419,113	3,941,192	3,941,192	4,166,867	소득 100% 이하	4,884,448	5,630,275	5,630,275	5,952,668
구분	3인이하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																
소득 50% 이하	2,442,224	2,815,137	2,815,137	2,976,334																	
소득 70% 이하	3,419,113	3,941,192	3,941,192	4,166,867																	
소득 100% 이하	4,884,448	5,630,275	5,630,275	5,952,668																	

4 임대신청문의

▶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문의

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☎1600-3456